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미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0조 개정(‘26.8.11. 개정, ‘27.2.12. 시행)됨에 따라,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[별표5]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

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(별표 5)

-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미이행시 부과하던 과태료 200만원을 위반 회수에 따라 1차 위반시 300만원, 2차 위반시 500만원, 3차 위반시 1,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개정
-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2호아목의 근거 법령란 및 과태료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90조	(1차 위반)
제1항제2호	300만원
	(2차 위반)
	500만원
	(3차 위반 이상)
	1,000만원

별표 5 제2호자목의 근거 법령란 중 “제2호”를 “제3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	
연 락 처	(044) 202 - 3181